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09. 4. 23(목) 10:30		
배포일시	2009. 4. 23(목) 09:3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
담당과장	윤정식 (2150-5450)	담당자	김우중서기관 (2150-5451)

제목 : 1/4분기중 83.7조원, 계획대비 1.1배 조기집행

- 4대 중점관리분야 29.8조원 집행, 1.2배 초과 달성
- 긴급입찰제도 활용, 선금지급을 확대 등으로 조기집행에 탄력

□ 기획재정부는 4월 23일 오전 7:30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“비상 경제대책회의”에 1/4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하고, 국민들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집행관리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.

□ 또한 12:00부터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하는 제8차 ‘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’를 개최하여 기관별 1/4분기 조기집행 실적들을 점검하고 2/4분기 조기집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.

- 회의에서는 조기집행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중기청의 “R&D 자금 기술개발포인트제” 등 창의적·효율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각 부처의 모범사례도 발표될 예정임.

<별첨1> 조기집행 우수사례(예시)

□ 한편, 조세연구원은 금년 상반기 조기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정을 균등집행하는 경우보다 2009년도 중에 0.7%내외의 경제성장률 제고와 4.8만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.

□ 3월말까지 총 257.7조원 중 83.7조원을 집행하여 3월말 계획 76.0조원에 비해 7.7조원을 더 집행하여 110.1%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, 연간 진도율은 32.5%로 3월말 계획(29.5%) 보다 3.0%p 앞서가고 있음.

< '09.3월말 재정집행 실적 >

(조원, %, 누계)

구분	'09 계획(A)	'09.3월말			연간 진도율		
		계획(B)	실적(C)	C-B	집행률(C/B)	'09.3월(C/A)	'08.3월
주요사업비	257.7	76.0	83.7	7.7	110.1	32.5	22.7
·예산	170.1	54.3	57.0	2.7	105.0	33.5	23.2
·기금	30.5	7.8	7.8	0	100.0	25.6	20.8
·공기업	57.1	13.9	18.9	5	135.5	33.1	22.5

□ 일자리 창출,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도 29.8조원을 집행하여 123.1%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.

< '09.3월말 4대 중점관리분야 재정집행 실적 >

(조원, %, 누계)

구분	'09계획	09.3월말			상반기	
		계획(A)	실적(B)	집행률(B/A)	계획	진도율
계	77.5	24.2	29.8	123.1	49.7	64.1
·일자리 사업(229개)	7.1	2.2	2.5	113.6	5.0	70.0
·금융시장안정사업(9개)	3.8	3.8	3.8	100.0	3.8	100.0
·SOC사업(1,170개)	42.9	10.7	15.3	142.8	26.5	61.8
·민생안정사업(125개)	23.7	7.5	8.2	109.3	14.4	60.7

□ 긴급입찰제도 활용 확대 등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재정 조기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①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, 계약까지의 기간을 1/2이상 단축

○ 통상 70~90일이 걸리던 공사계약의 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이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22.9~34.5일까지 단축됨.

○ 이에 따라 3월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.8조원으로 전년대비 130.8% 증가, 이중 긴급입찰금액은 2.9조원으로 329.3% 증가함.

- 총 공사계약금액 : ('08.3) 1.6조원 → ('09.3) 3.8조원(130.8% 증)
- 긴급입찰금액 : ('08.3) 0.7조원 → ('09.3) 2.9조원(329.3% 증)

< '09.3월말 조달청 공공공사 계약현황 >

(건, 억원)

구 분	총계약 실적(A)*		긴급입찰 실적(B)		비율(B/A, %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'08.1~3월	5,365	16,318	1,659	6,669	30.9	40.9
'09.1~3월	9,898	37,655	4,103	28,631	41.5	76.0
증 감 (%)	4,533 (84.5)	21,338 (130.8)	2,444 (147.3)	21,962 (329.3)	-	-

* 공사계약 : 각 연도 신규 계약분 기준(장기차년도 제외, '09년 10.5조원, '08년 4.2조원)

②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을 10%p 확대로 선금 지급액 증가

○ 3월말까지 정부의 계약금액 40.0조원(40천건) 중 9.3조원(23.2%)을 선금
으로 지급하여 '08.3월 대비 257.7% 증가('08.3 : 26조 → '09.3 : 9.3조)

▪ 선금지급 공사건수 비율 : ('08.3) 6.9% → ('09.3) 21.5%

< '09.3월말 선금지급 현황 >

(건, 조원, %)

구 분	총계약 실적(A)*		선금지급 실적(B)		비율(B/A, %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'08.1~3월	28,130	26.1	1,952	2.6	6.9	10.2
'09.1~3월	39,541	40.0	8,517	9.3	21.5	23.2

* 총계약실적은 집행접점 대상 기관의 공사·용역·물품 계약 실적

③ 지방비 확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
완화하여 '09.3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.3조원 교부하였고, 지방
교부금도 20.2조원을 교부하여 지방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

< '09.3월말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>

(조원, %, 누계)

구 분	지자체 보조 사업비(A)	3월말 교부실적(B)	비율 (B/A, %)
'08년	24.9	5.5	22.1
'09년	29.3	10.3	35.2

※ 지방교부금 교부현황 : ['08.3] 16.4조(27.6%) → ['09.3] 20.2조(32.9%)

□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으로 관리
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

-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(end-user)에게 도달된 실적도 관리
하기 위해 중앙-지방간 재정시스템을 상반기 중 연계
-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·보조금도 최종수요자에 집행된 기준
으로 관리(5월중)

□ 아울러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자체의
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0.6조원
에서 5.9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함.

□ 국회 심의중인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
여력 보완, 경기 변동성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
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,

-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, 계약·발주 준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
하여 국회의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
-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'추경예산 집행지침'을 별도로 마련하며,
각 사업별로 집행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며,
- 주요 추경사업은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성과
평가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집행관리 및 사후평가를
강화할 예정임.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참고 1 조기집행 우수 사례(예시)

1. 기술개발 포인트 지급제 도입(중기청)

□ 개요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집행시 기술개발비 카드제를 운영 중이나, 계좌이체방식에 비해 사용률이 저조
-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계좌이체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, 카드 사용비중은 10.8% 수준
 - * 결제수단별 사용비중('07) : 계좌이체 86%, 카드 10.8%, 현금 3.2%

□ 제도개선 내용

- 기술개발 수행기관의 계좌에 현금입금 대신 포인트를 지급·사용토록 하는 '기술개발비 포인트제'¹⁾ 도입
 -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거래 상대방 주요정보 및 사용용도를 입력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수탁은행이 지급
 - 지급 요청 및 집행관련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이용

□ 효과

- 연구비 통합계좌를 통한 R&D자금 운용으로 자금의 유용 및 부당 사용을 원천 차단
 - 높은 이자수익 및 협약 중단·취소시 자금의 적기 환수 가능

1) 'R&D 자금 통합 수탁은행 (custodian bank)' 제도를 통해, 개별 기업이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·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용하는 포인트를 차감

2. 국고교부전 사업간 예산조정(환경부)

□ 개요

- 지자체별로 사업진도, 집행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하수도분야 국고 보조사업의 사업별 예산배분 조정('09.2.10)
 - 공법선정,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감액후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증액 지원
 - ※ 「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하수도예산 조기집행 대책('08.12)」 후속 조치

□ 제도개선 내용

- 하수처리장 확충 등 4개 분야 41개 사업의 예산 287억원을 감액한 후 집행이 원활한 45개 사업에 증액 지원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'09예산	조정예산액	사업수	
			감액	증액
합 계	1,263,907	28,661	41	45
▪ 하수처리장 확충	564,173	14,232	13	18
▪ 하수관거정비	499,033	10,341	11	11
▪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	98,241	2,720	16	12
▪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	102,460	1,368	1	4

- 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3개소 사업비 14,232백만원을 감액하여 18개소에 증액 지원
 - 일반하수처리장은 4분기 발주가 가능한 청주시 여과시설 등 10개소 사업비 10,262백만원을 감액하고,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논산시 고도 등 14개소에 11,862백만원 증액 지원
 - 슬러지처리시설은 부지 및 공법선정이 지연된 부산슬러지 등 3개소 3,970백만원을 감액하여 진주슬러지 등 4개소에 2,370백만원 증액 지원

- 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지연된 대전시 등 11개소 10,341백만원을 감액하여 부산 가야범천분구 등 11개소에 증액지원
- ③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설계지연으로 하반기 이후에 발주가 가능한 완주군 구암 작천 등 16개소의 2,720백만원을 감액하여 서산시 초록리 등 12개소에 증액 지원
- ④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남해군 이동 1개소의 집행잔액 1,368백만원을 감액하여 무안군 해제 등 4개소 증액 지원

□ 효과

- 예산 조정후 1분기 중 하수도 분야에 총 3,780억원을 교부하였고, 교부액의 86.2%인 3,259억원을 집행 완료함.
- 사업진도 및 집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지자체의 예산 조기 집행 촉진

3.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(RFID) 도입(주택공사)

□ 개요

- 현행 건설관리시스템에서는 기성금 지급시 수급업체 및 하수급업체가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지급 여부 파악이 곤란
 -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, 기성대가 전용 등 노임체불 발생
- 주택공사는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(RFID)으로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를 관리
 - 실시간으로 근태관리, 기성금 지급시 노임 지급여부 파악

□ 제도개선 내용

- 발주자가 시스템을 통해 매일 현장근로자 출근현황 및 노임지급 현황 확인 후 기성금 지급
-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SMS 문자 서비스 시행
 - 수급업체가 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기성지급현황을 SMS 문자로 발송

□ 효과

- 건설현장의 임금유보 관례를 금지하여 현장근로자에게 조기에 임금지급 및 노임체불 요인 사전 제거
 - 제도개선후 노임체불 관련 민원감소 및 건설근로자에게 약 2개월 임금 3,640원을 조기에 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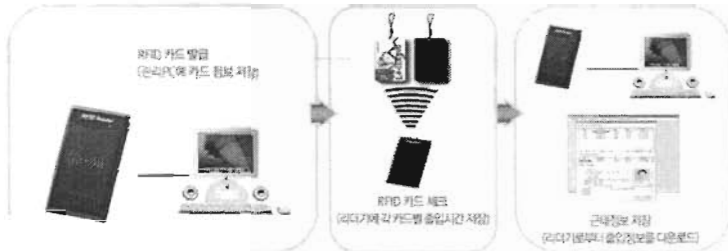
<별첨>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 및 SMS 문자발송 서비스 개요

○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 개요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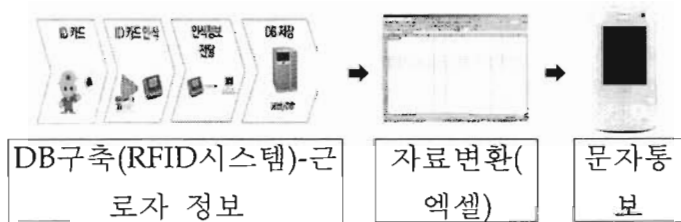
-공사청(산업현장) 인부 출결관리 - 흐름



-공사청(산업현장) 인부 출결관리 - 기능구성



○ SMS 문자발송 개요



4. 조기보상 희망제도 시행(수자원공사)

□ 개요

○ 보상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기보상 추진

- 보상비 지급을 위한 정상적인 보상절차인 『토지보상법』 중 보상절차를 간소화한 『조기보상 희망제』 시행

□ 제도개선 내용

○ 사업명 :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

* '09년 예산 : 1,572억원 중 보상비 1,157억원

○ 지장물이 없는 농지지역(3,700천m²)을 대상으로 조기보상 희망 제도 시행

- 보상계획공고, 보상협의회 설치 및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생략으로 보상비 집행기간 2~3개월 단축

□ 효과

○ 보상비 집행 기간 2~3개월 단축으로 예산집행 목표 조기 달성 기반마련

- 보상비 조기지급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

○ '09년 보상비 1,157억원 중 상반기 900억원(77.8%) 집행 전망

당초전망	집행전망	효과
-	900억원	집행금액 중 900억원

<별첨> 보상절차 비교(토지보상법 vs 조기보상희망제)

토지 보상법	조기보상 희망제
주거지역 등 기타지역	농경지 지역(조사 기원료)
·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(토지보상법 제14조)	·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
·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물건 확정 (토지보상법 제15조)	· 보상계획공고 생략 (조기보상희망자 신청)
· 보상협의회설치 (토지보상법 제82조)	생략
	· 조기보상 희망자 보상물건 확정
·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(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)	생략
·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(토지보상법 제68조)	·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
·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(토지보상법 제17조)	·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
4 ~ 5개월 소요	2개월 소요

※ 보상계획공고(14일소요), 보상협의회설치(45일~60일소요)

※ 보상협의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보상추진 일정 장기화

참고 2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요

□ 구성 및 운영

- 구성 : 기획재정부 제2차관(주재), 각부처 1급 및 공기업 부사장
- *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'재정관리점검단'을 한시적으로 '예산집행특별점검단'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
- 개최 주기 : 매월 2회(전체 1회, 부진기관 1회)

□ 점검 대상

- 예산, 기금 및 투자사업 규모가 큰 공기업의 주요사업비
- * 예산 40개, 기금 39개 및 공기업 25개
- 인건비, 경상경비 및 정부내부거래 등 제외

□ 점검 사항

- 월별 예산집행실적
- 집행상 애로요인 및 해소 대책 논의
- 집행 원활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현황
- 부처, 공기업 자체점검 현황 등

□ 개최실적

차수	개최일시	참석자	논의사항
1차	'08.12.17	· 주재:재정부 제2차관 · 40개 부처 실장 및 14개 공기업 부사장	· 조기집행 추진 방안 및 09년 집행계획
2차	'09.1.15	· 주재:재정부 제2차관 · 29개 부처 실장 및 18개 공기업 부사장	·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 · 예산집행 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
3차	'09.1.22	· 주재:재정정책국장 · 14개 부처 과장 및 18개 공기업 본부장	· 1월 중간점검 및 향후 대책
4차	'09.2.11	· 주재:재정부 제2차관 · 28개 부처 실장 및 16개 공기업 부사장	· 1월 집행실적 및 자체점검 추진상황 등
5차	'09.2.24	· 주재:재정정책국장 · 16개 부처 과장 및 6개 공기업 본부장	· 2월 중간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등
6차	'09.3.12	· 주재:재정부 제2차관 · 23개 부처 실장 및 13개 공기업 부사장	· 2월말 집행실적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등
7차	'09.3.26	· 주재:재정정책국장 · 12개 부처 국과장 및 8개 공기업 본부장	· 3월 중간점검 및 자체현장점검 현황 등
8차	'09.4.23	· 주재:재정부 제2차관 · 19개 부처 실장 및 10개 공기업 부사장	· 1/4분기 집행현황 및 추경예산 집행방안 등